# 앙드레 고르츠의 무조건적 기본소득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기본소득이 낯설고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제법 오래된 역사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말 그대로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역사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적 지위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부상한 구체적 맥락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이 아이디어가 진전하는 조건과 이를 가로막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앙드레 고르츠André Gorz가 쓴 아래의 글 「사회와 공동체의 차이에 관하여, 그리고 기본소득 자체가 사회나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권을 줄 수 없는 이유 On the Difference between Society and Community, and Why Basic Income Cannot by Itself Confer Full Membership of Either」는 1989년 9월 벨기에 루뱅에서 열린 "자유, 평등, 생태주의: 기본소득의 윤리적 기초를 둘러싸고"라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빌 조던Bill Jordan의 「기본소득과 공동선Basic Income and the Common Good」에 대한 논평이다.

후일 앙드레 고르츠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지만, 이 시기에는 기본소득을 여전히 상호성, 권리와 의무라는

사회 및 공동체 구성의 원리와 연결해 사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기본소득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및 추가적인 일자리 공급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앙드레 고르츠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기존의 사회적 배치, 즉 노동시장, 복지체제, 사회관계 등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부분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 기본소득이 해방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보다는 기존의 사회적 배치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는 부정의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전면적인 기본소득이 아니라 부분기본소득 혹은 '범주별 기본소득'이 기본소득 도입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거쳐야 하는 연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의미 있게 주의를 주고 있다. 또한 기본소득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모두의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기본소득이 어떤 제도나 정책과 결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고를 촉구하고 있다.

원문은 다음에 실려 있는 것을 사용했다. Philippe Van Pariojs (ed.), Arguing for Basic Income: Ethical Foundation for a Radical Reform, Verso, 1992, pp. 178-184.

# 사회와 공동체의 차이에 관하여, 그리고 기본소득 자체가 사회나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권을 줄 수 없는 이유

앙드레 고르츠

빌 조던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동의하지 않는 게 있다. 빌 조던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리 모두 두 유형의 공동체에 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는 동의한다.

1. 내가 미시 사회적 공동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유형은 가족, 클럽, 협동조합, 자조 네트워크, 상조를 위한 지역 결사체 등등이다. 이 미시 사회적 공동체의 뚜렷한 특징은 공통의 이해관계 및 노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상품 관계가 없으며,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고, 교환은 공식적으로 양화되지 않으며, 관계는 상호성에 기초하고 있다.

2. 빌 조던이 정치 공동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유형은 내가 거시 사회적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거시 사회적 관계 — 국민국가, 지방, 도시 따위의 다른 성원들에 대한 관계 — 는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식적으로 자기 조절될 수 없다. 거시 사회적 전체 — 수많은 작은 공동체를 포함하는 사회 전체 — 는 오늘날 체제라는 것으로 지칭되는 것의 수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인 성원이나 결사체 성원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그것이 적절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행정, 관료제, 기구 등이 필요하며, 그것에는 거대 도구megatools의 크

기와 복잡성이 늘어남에 따라 미시 사회적 공동체가 이전에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침입하고 (하버마스가 말했듯이) '식민화' 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의 결과는 사회적 해체다. 거시 사회적 전체는 점점 추상적인 것이 되고 만연한 것이 되며, 이에 반해 미시 사회적 공동체는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은 18세기에 자본주의적 현대화 및 산업화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맑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 선언』에서 생생하게 서술한 바 있다. "견고한 것은 모두 증발해 버린다."

사회적 해체의 배후에 있는 추동력은 시장이다. 즉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한 자발적인 협동에 치명적인 경쟁적 상품 관계의 팽창이다. 상품 관계가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는 사회적 개인들의 관심 밖의 것이 되며, 사회체제가 완전히 붕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 즉 제삼자 — 가 이를 떠맡아야 한다. 시장경제 혹은 시장사회는 시장의 논리에 맞선 국가 규제, 개인들의 개입과 보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의 각 구성원의 분열된 현실이 나타난다. 우리는 국가에 의해 보호받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권리를 요구하는 동시에, 개인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할 권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발전이 완전히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빌 조던의 주장에는 동의한다. 미시 사회적 공동체 망의 해체는 뿌리 뽑힘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의 해방, 마을 공동체, 교회, 위계적 관계 등 순응주의적 압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사회에는 자발적인 협동과 공유된 프로젝트에 기초한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미시 사회적 공동체가 발전한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체로 필요는 상품 생산과 교환에 의해 충족되며, 공유sharing에 기초한 공동체는 상품 생산도 국가의 원조나 케어도 충족하지 못하는 빈 공간을 채우는 데 한정된다. 그 결과, 공동체적 관계의 영구적인 결핍 혹은 — 이와 동일한 것으로 — 사회적 통합 및 성원권의 영구적인 결핍을 경험한다.

빌 조던이 정치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시 사회적 체제의 성원이 되는 것이 이러한 결핍을 보상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90년 전에 에밀 뒤르켐은 "개인들을 강하게 끌어당길 정도로 가깝고, 따라서 이들을 사회생활의 흐름에 따라 살도록 하는 일련의 제2차 집단이 국가와 사적 개인들 사이를 채울 때에야 국민nation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치 공동체"의 성원권은 그 자체로 통합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권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적 인격으로서의 존재를 넘어서서 다른 개인과 동등하고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일반적 개인으로 만드는, 만인에 대한 공통적인 권리와 의무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추상적이고 익명적인 성원권이 사람들에게 소속감, 참여와 연대의 감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빌 조던은 "시민들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창출하는 수단으로서의 전후 복지국가 제도의 비효율성"을 언급할 때 이 점을 인정한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상황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보자면 복지국가 제도이며, 법률에 의해 — 즉 국가에 의해 — 시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그 자체로는 그 어떤 의사소통적인 유대, 자발적 협력, 참여, 공유 등을 함축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이전에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 이상으로 서로를 돌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저 국가가 사람들을 더

광범위하게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a) 미시 사회적 유대의 탈구와 (b)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할당하고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를 분배하는 효과적인 체제로서의 노동시장의 붕괴를 보충하는 것이다.

시장사회의 결점을 보충하는 것이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빌 조던의 핵심 주장, 즉 소득의 결여(빈곤)에 의해서만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될 수 있으며 빈민의 소득을 보충해 주는 것 자체가 "그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해 준다"라는 주장에 강하게 반대한다. 다소간 정상적인 생활수준이 "완전한 참여"에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분명 아니다. 소비조차 시장에서 팔리는 소비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인 한 "참여"의 정반대다. 빌 조던의 논문 대부분에서 성원권, 참여, 포함 등은 공유와 결사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공유하는 자원이 어디서 오는지는 언급되지 않는다.

나의 논점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거시 사회적 공동체의 소득과 성원권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며 그러한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다고 느끼려면 스스로가 전체로서의 사회에 유용하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으며, 그러려면 가지고 있는 숙련기술이나 능력이 어떤 것이든 사회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자리가 필요하며, 그것도 다른 누군가의 개를 산책시키거나 구두를 닦거나 거리에서 꽃을 파는 것과 같은 임시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가 필요하다.

여성이라면 필요한 돈이 다 있다 하더라도 미시 사회적 공동체의 성원권이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

다. 상호적 교환, 서로 잘 알고 있는 특정 공동체의 사람들과의 협력과 공유 같은 것이 법적 권리나 시민적 권리의 원천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이 특정 공동체 내에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나이 든 어머니를 돌보거나, 가사노동을 하거나, 자기 아이를 키우거나, 자조 결사체에서 일하는 것이 사회에 유용한 활동일 수는 있지만, 이 활동이 법적, 경제적, 시민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을 어머니나 가족, 이웃을 위해 수행하며,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이 기뻐하는 한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회가 당신에게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어머니를 돌보거나, 가사노동을 하거나, 당신이 걸렸던 것과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조언하거나 경험을 공유하는 것 등등을 법적 의무로 삼는 사회를 당신은 아주 싫어할 것이다. 당신은 이것이 사회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회적으로 보상받거나 승인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맺는 비공식적이며 상호적인 관계를 사회적으로 공식화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그것들은 법적 권리의 원천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른 시민들에 대한 어떤 시민의 공식적인 의무일 수 없고 의무여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민인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 시민으로서 수행하는 활동에 의해서만 경제적 시민권을 획득할 것이다. 이는 특정한 사적 유대를 통해 연결된 사적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고 서비스를 수행하는 생산의 사회적 과정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 경제적, 법적 시민권을 획득할 것이다. 우리는 양로원에서 노인을 돌보거나 유치원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 경제적 시민권을 획득할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거시 사회적 영역에서 시민으로서 다른 시민에게 봉사하며, 우리의 노동이 함축하는 의무와 이 일에 따른 보상이 법적, 사회적으로 공식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공적인 거시 사회적 영역에서 일한다는 것은 (1) 우리가 우리의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얻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누군가와 마찬가지로 훌륭하며 다른 누군가와 동등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일을 수행한다는 것이며, (2) 우리가 우리의 사장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 표현될 수도 있고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 필요나 요구를 채우기 위해 일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사장은 매개자로서, 우리가 그의 매개를 통해 단추 공장에서 하는 일은 단추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단추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용자에게 정해진 노동시간과 노동의 질만 책임지면 된다. 우리는 사장을 개인적으로 기쁘게 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을 해 줄 필요도 없다. 사장은 그/녀와 동등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 법적으로 규정된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나는 사회의 경제적 시민권 및 완전한 성원권을 획득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일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런 측면들을 강조한다. 특히 임시 일자리와 개인 하인 및 가내 하인의 일자리, 성매매 일자리, 심부름꾼 등등은 아주 다른 범주에 속한다. 이런

일자리는 사적 영역에서 다른 사람의 사적 편익을 위해 사적 개인인 다른 사람에게 해 주는 서비스다. 이런 일자리는 인격적 요구에 인격적으로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사장을 인격적으로 즐겁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장에게 동등한 사람으로서 봉사하는 시민이 결코 아니며, 사장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노예상태를 예외로 한다면 사회적으로 공식화될 수 없다. 이런 일자리는 사적 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것이 경제적 시민권과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에 핵심적이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생산의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식화된 공동체와 집단 내에서 사회화 및 성원권의 핵심 요인이다. 이는 노동시간이 현재의 평균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렇다.

빌 조던은 자신이 쓴 글 말미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회에 포함되는 것에 일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공적, 거시 사회적 영역에서의 일과 임시 서비스 일자리를 구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기본적 필요가 충족될 수 있는 안전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를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파트타임과 단기 고용계약이 늘어나면서 점점 파편화되는 노동시장에서, 기본소득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그러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유인을 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런 방식의 정식화를 크게 우려한다. 이것은 기본소득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 방금 인용한 정식화에서 빌 조던은 노동시장의 파편화를 주어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며 시장의 힘이 일자리의 성격과 내용을 계속해서 규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노동인구는 분절화될 것이다. 즉 줄어들고는 있지만 숙련기술이 있고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받는 풀타임 일자리가 있는 노동귀족을 한편으로 하고 매주 파트타임 일자리나 단기 일자리에서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게 될 점점 확대되고 있는 미숙련노동자라는 프롤레타리아 하층계급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분절화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유연한 노동시간과 유연한 노동력이라는 경향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며, 이를 수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임시 일자리의 번성을 도와줄 것이다. 그러한 모든 비정규적이고 임금이 형편없는 일자리는 하층계급이 제공하는 인격적 서비스인데, 이 하층계급을 고용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일상의 잡일을 처리할 하찮은 노예를 부려 여가와 안락을 얻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아주 값싼 노동을 원하면서도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가 될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들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소득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내가 사회의 남아프리카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현재 영국 노동력의 약 45%가 실업이거나 임시 파트타임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다.

2. 물론 기본소득에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며, 빌 조던이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가난하고 숙련기술이 없으며 일자리가 없는 하층계급을 유지하는 대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좀 더 균등하게 노동인구 전체로, 특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 확산할 것이고, 노동시간 단축을 자극할 것이며,

모두가 숙련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공동체 일에 대한 무제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좀 더 돈을 버는 일을 할지 아니면 협동조합, 공동체, 가족 수준에서 스스로 일을 더 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고용을 위한 서비스 고용의 성장"은 따라서 약화할 것이다.

그러나 빌 조던이 바라는 이러한 결과는 기본소득만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세 가지의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나타날 것이다.

(1) 노동시간은 모두가 증가한 사회적 소득을 통해 근로소득 상실분을 벌충할 수 있을 정도로 단계적으로 충분히 축소되어야 한다.

(2) 노동시간 단축 덕분에 늘어난 일자리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훈련 정책을 통해 실업자와 반실업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느 연령대의 사람이라도 모두가 원하는 시간에 새로운 숙련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공동체 노동이나 협동조합 노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 이것은 자발적 활동이 벌어질 수 있는 공적 영역, 장소,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서로 서비스를 해 주고 지식을 교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노동 교환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유사 계약과 유통할 수 없는 보너스의 형태로 공적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공통의 이익을 위한 일부 서비스는 우리가 필요한 경우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준다. 예를 들어 공동체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노인에게 이런 권리가 주어질 수 있다.

뮈켄베르거, 오페, 오스트너(1989)는 이 세 가지 조건 — 내가 반복한 것처럼 — 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 조건의 필연적인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내가 한 것처럼 이들은 대가가 지불되는 노동이 하층계급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간헐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매달이나 매년 혹은 주기적으로 대가가 지불되는 활동의 중지나 단절이 사용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기본소득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준다. 기본소득은 더는 우리가 일자리가 없을 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주는 어떤 것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사회 내에서 경제적으로 유용한 노동을 수행한 몫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득이다. 그런 사회에서는 노동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으며, 그 결과 누구도 충분한 소득을 얻기 위해 매년 풀타임으로 일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 노동이 중지되거나 단절될 때 지불되는 소득은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몫의 지연된 지불 혹은 예상된 지불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번 것이며, 우리가 수행한 노동의 기본 양에 대해 사회가 빚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수여되는 것이 아니다. 내 견해로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회의 완전한 성원권을 주는 방법이 아니다.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의무도 없다면 우리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어떤 집단의 성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소는 상이한 이 접근법은 빈곤과 배제의 원인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경제에 대한 사회적 관리 및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제한을 함축한다. 특히 증가하는 부의 분배와 필요한 노동량의 축소가 여전히 시장의 힘에 맡겨져 있는 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에 따른 임금 상실분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벌충해 주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케이크에 대한 각자의 몫을 사후에 재분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은 언제나 이미 분배되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부, 노동, 가처분 시간에 대한 각자의 몫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장래의 생산 증가와 생산성 향상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며, 특히 어느 정도가 (a) 노동시간 단축에, (b)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에, (c) 임금이 사회적 소득 증가에 할당되어야 하는가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의 계획을 함축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계획이라는 이 생각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과거에 4년이라는 기간에 대해 노동, 임금, 피고용인 수의 변화에 대비하는 수많은 노사 협약의 예가 있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적 소유건 국가 소유건 모든 현대 기업은 생산성, 노동력, 임금 비용 등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중기적으로 예측한다.

## 참고 문헌

Muckenberger, Ulrich, Offe and Ostner Ilona (1989), "Das staatlich garantierte Grundeinkommen — ein sozialpolitisches Gebot der Stunde," in Han Leo Kramer and Claus Leggewie (eds.), Wege ins Reich der Freiheit, Festschrift für Andre Gorz zum 65 Geburgstag, Berlin: Rotbuch, 247-278.